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9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최혁진 · 박민규 · 조계원
이수진 · 윤종오 · 문진석
전종덕 · 정혜경 · 김종민
윤준병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대책에서도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하여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상피제 의무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약칭은 「경찰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신고·회피·

이관 절차, 복수담당 원칙,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 대한 순환근무 및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동일 경찰관서·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며, 유착 비위자에 대한 전보 및 복귀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역 유착·이해충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독립적 조사·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가족 관련 사건이나 이해충돌·지역 유착 우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지역 유착 방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3항,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3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은 사건처리 및 인사운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은 지역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순환근무, 사건회피, 사건이관 및 감찰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역 유착 방지에 관한 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 감찰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독립적 조사·감찰 기구) ① 경찰의 비위, 유착행위, 사건은폐, 부당개입 및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감찰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 조사·감찰 기구를 둔다.

② 독립적 조사·감찰 기구는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독립적 조사·감찰 기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자료 및 기록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3. 현장 확인
4. 감찰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5. 제도개선 권고

④ 독립적 조사·감찰 기구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역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또는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경제, 민원 등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서로 순환배치하여야 한다.

⑦ 수사 또는 사건처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⑧ 동일 경찰관서 또는 동일 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는 제한한다.

⑨ 단독 담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산기록으

로 남겨야 한다.

⑩ 경찰공무원이 지역 유착, 사건은폐, 청탁 또는 부당개입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원래 근무지 또는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귀를 제한할 수 있다.

⑫ 순환근무의 대상, 기간, 예외, 지원 및 인사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생 략)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경찰은 사건처리 및 인사운 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경찰은 지역 유착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순환근무, 사 건회피, 사건이관 및 감찰조치 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0조의2(지역 유착 방지에 관 한 심의) 국가경찰위원회는 경 찰의 지역 유착 방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 감찰체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u>
<u><신 설></u>	<u>제13조의2(독립적 조사 · 감찰기 구) ① 경찰의 비위, 유착행위, 사건은폐, 부당개입 및 권한남 용 의혹을 조사 · 감찰하기 위 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 조사 · 감찰기구를 둔다.</u> <u>② 독립적 조사 · 감찰기구는</u>

제30조(경찰서장)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독립적 조사·감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자료 및 기록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3. 현장 확인
4. 감찰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5. 제도개선 권고

④ 독립적 조사·감찰기구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경찰서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속기관의 장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역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또는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경제, 민원 등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

<u><신 설></u>	<u>또는 다른 관서로 순환배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수사 또는 사건처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⑧ 동일 경찰관서 또는 동일 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는 제한한다.</u>
<u><신 설></u>	<u>⑨ 단독 담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u>
<u><신 설></u>	<u>⑩ 경찰공무원이 지역 유착, 사건은폐, 청탁 또는 부당개입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u>
<u><신 설></u>	<u>⑪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원래 근무지 또는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귀를 제한할 수 있다.</u>
<u><신 설></u>	<u>⑫ 순환근무의 대상, 기간, 예외, 지원 및 인사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